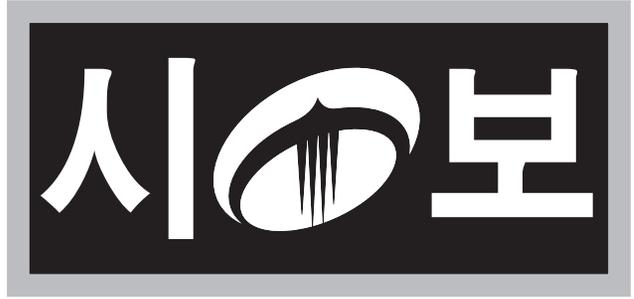


# 포 항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741호 2009. 8. 11(화)

선	기 관 의 장
람	

## 포 항 시

- 부시장지시사항..... 2
- ◀ 규 칙 ▶
-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(제520호) ..... 7
- ◀ 입법예고 ▶
-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(제2009-880호) .....11
- ◀ 공 고 ▶
-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(폐차)공고(제2009-871호) ..... 23
- 第157回 浦項市議會(臨時會) 集會公告(제6호) ..... 27

회								
람								



관리 번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8. 10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0년 국가예산확보 철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획재정부에서는 8월 하순부터 쟁점사업 예산심의에 착수하는바 부서별 중앙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기 바람.</li> </ul> </li>   <li>○ 부서별 포트세일 실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월 8일 처녀입항식에 이어 물동량 확보가 중요함, 부서별 담당기업 포트세일을 적극 실시하기 바람.</li> </ul> </li>   <li>○ 해수욕장 등 피서지 환경정비 철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계 휴가기간 중 해수욕장, 산간, 계곡 등 피서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자연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.</li> </ul> </li>   <li>○ 을지연습에 맞은 바 임무수행 협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09 을지연습이 전국에서 실시됨,</li> <li>- 매년 실시되는 훈련이지만 부서별 맞은 바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.</li> </ul> </li> </ul>	<p>전 부 서 (기획예산과)</p> <p>전 부 서 (항만정책팀)</p> <p>전 부 서 (환경위생과) (해양수산과) (남, 북구청)</p> <p>전 부 서 (재난안전과)</p>

관리 번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8. 10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포항 스틸러스 K-리그 경기관람과 응원실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8연승의 상승세 속에 8.15(토) 17:30. 스틸러스 홈구장에서 개최되는 성남일화와 K-리그 경기에 많은 시민과 직원들이 관람하며 응원 해주기 바람.</li> </ul> </li>   <li>○ 각종 사업 조기마무리 추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종 사업이 착공이후 조속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.</li> <li>-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 하여 조속 완공 및 공기단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.</li> </ul> </li>   <li>○ 부서별 각종 행사와 사업의 선거법 위반사례 방지철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서별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기 전 선거법 저촉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,</li> <li>- 선거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시 산하 전 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</li> </ul> </li> </ul>	<p>전 부 서 (체육지원과)</p> <p>전 부 서 (건설과) (건설환경사업소) (남, 북구청)</p> <p>전 부 서 (자치행정과)</p>



관리 번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훈 시 (8. 10)	<p>○ 포항의 지도가 바뀌고 있음(포항시 교통SOC변모상) 을 시민들에게 홍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포항IC에서 신항만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 되어 도로를 주행하면서 포항의 지도가 바 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음</li> <li>- 공무원들이 먼저 여러 방면의 신항만 연결도로를 이용하여 느껴보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바람..</li> </ul>	전 부 서 (공보담당관) (자치행정과) (항만정책팀)

**규 칙**

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09년 8월 11일

포항시 규칙 제 520 호

**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**

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, 경리관, 지출원, 출납원,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

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 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.

⑤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.

**제99조제1항제3호 중** “새마을금고법, 신용협동조합법, 상호저축은행법”을 “「새마을금고법」, 「신용협동조합법」, 「상호저축은행법」”으로 한다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~③ (생략)            &lt; 신 설 &gt;</p>	<p>제2조(정의) ① ~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, 경리관, 지출원, 출납원,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.           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.</p>
<p>제99조(금고의 구분) ① (생략)            1 ~ 2 (생략)            3. 시금고 수납대행금 -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 기관, 체신관서, 새</p>	<p>제99조(금고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1 ~ 2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3.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「새마을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</p> <p>4 ~ 5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금고법-----</p> <p>---- 「신용협동조합법」 ----</p> <p>----- 「상호저축은행법」-----</p> <p>4 ~ 5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1. 개정이유

「회계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규명하고 있으나, 재무회계규칙 상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및 책임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회계책임 관련규정을 재무회계규칙에 신설하여 회계담당자 및 사업부서담당자의 회계책임에 대한 경각심 확대

나.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고의·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음을 명문화

# 입법예고

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09년 8월 7일

포항시 공고 제2009-880호

##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 용이 및

소비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하며, 안정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**가.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**

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구성 및 임기
- 협의회 주요 자문·심의사항 및 회의

**나.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 (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)**

-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
-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및 구매의무 범위 지정
-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설정 및 관리
- 기관 구매담당자 교육

**다. 친환경상품 생산·소비 촉진 (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)**

-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정지원
- 친환경식품 생산·유통·판매지원 및 구매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 강구

**라. 보칙 (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)**

-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, 생산자,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포상 및 사무분장

**3. 의견제출**

이 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09. 8.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 : 환경위생과장, ☎270-3086, FAX 270-3090)에게 제출하거나,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
**4. 기 타**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www.ipohang.org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*붙 임 :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(안) 1부.**

##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포항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관내기업”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포항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.
2. “자발적 협약”이라 함은 시장, 공공기관, 사업자,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 상품  
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,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적용대상)**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구청, 읍·면·동
2. 포항시의회
3. 포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.)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포항시장(이하 “시

장” 이라 한다.)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

**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**

**제5조(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설치·운영)**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자문·심의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시 의원, 시 공무원과 관련 기관·단체 및 관계 전문가,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협의회의 기능)** 협의회의 주요 자문·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
3.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
4.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, 변경, 폐지에 관한 사항
5.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·유통·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**제7조(회의)**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(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)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8조(간사)**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환경위생과장이 맡는다.

**제9조(수당 및 여비)**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

**제10조(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촉진 시책의 수립)** ① 시장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매·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·장기 계획
2.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
3.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·외 판매·홍보 등 지원
4.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·판매 사업자 지원
5.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

③ 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.)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.

**제11조(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)**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

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
- 2.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
- 3. 계약특수조건 규정, 기관업무평가,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,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2조(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)**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·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
- 2. 친환경상품 생산·유통·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
- 3.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 실적
- 4.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천과 수범사례 등

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.

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은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,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3조(친환경상품 구매의무)** ①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.

- 1.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
- 2.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

3.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

**제14조(친환경상품 구매 예외)**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‘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’는 다음과 같다.

- 1.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
- 2.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
- 4.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
- 5.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

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 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판단기준의 설정·관리)**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‘친환경 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’ (이하 ‘판단기준’ 이라 한다)은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 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- 1.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
- 2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순환골재
- 3.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성적표시 인증제품
- 4.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
- 5. 제18조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·사용·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

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 평가단을 구성·운영하되,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

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.

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 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.

**제16조(교육훈련)**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 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·소비촉진

**제17조(행정지원 확대)**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친환경상품 생산·유통·판매지원)**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·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,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·판매를 위한 홍보, 시장 개척,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9조(친환경상품 정보제공)**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,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.

**제20조(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사업)**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  
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.

- 1.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
- 2.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
- 3. 학교법인
- 4. 종교시설
- 5. 체육시설
- 6. 산업계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·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  
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.

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·홍보  
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제5장 보칙 등

**제21조(기관 평가)** ① 시장은 각 부서 업무 평가시 평가 항목에 친환경 상품 구매실  
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 
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「수도법」, 「하수도  
법」 및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 
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**제22조(포상)**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·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 
구매담당자 및 생산자,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**제23조(사무분장)**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

은 별표 1과 같다.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【별표 1】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(제23조 관련)**

**1. 친환경상품 소비·생산정책 총괄 【환경위생과】**

-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
- 본청, 출장소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·동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
-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구청, 읍·면·동에서 제출한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
-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
  - 기준평가단의 구성·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
  -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
- 친환경상품 생산·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
  -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
  -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
  - 친환경상품 생산·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
  -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
-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

**2.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집계 이행 【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구청, 읍·면·동 등】**

-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구청, 및 읍·면·동은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 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환경위생과로 제출
-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구청, 및 읍·면·동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위생과로 제출
- 친환경상품 구매·용역계약 관련 교육(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구청 및 읍·면·동) 계획수립 및 교육실적 제출
-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
  - 역무대행, 학술연구,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
  -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

- 각종 간행물, 자료,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
-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
  - 시설·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
  - 시설·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
  -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
- 건설관련 담당자, 시설·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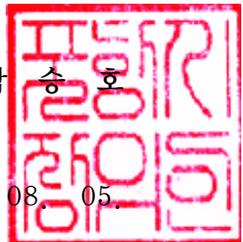
공 고

포항시 공고 제 2009 - 871호

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(폐차)공고

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코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(150만원이하의 범칙금)되며,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포항시장 박



2009. 08. 05.

1. 공 고 기 간 : 2009. 08. 05. ~ 2009. 08. 12. (8일간)
2. 폐 차 장 소 : 신진폐차장, 포항종합폐차장, 동해지구종합폐차장,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홍해종합폐차장, 태평양종합폐차장(주), 대원종합폐차장
3. 폐차 예정일 : 공고기간 종료 이후
4. 문 의 처 :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자 (054)270-3643
5.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.
6. 강제처리대상차량 : 붙임 내역참조

공고처리 내역

◆ 총건수 : 13 ◆ 공고기간 : 2009-08-05에서 2009-08-12까지

관리번호	자동차번호 성명	차명 주민번호	주소	방치장소		이해관계
				장소	보관장소	
2009-69	경북27다5921 서종진	세피아 541110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501번지 33/제일신천지타운 102동 1702호	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파출소 뒤 공터에	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교행, 환위상성화재해상보험(주)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187번2004카단 1845 포항시남구청세무	
2009-70	61가8596 이상철	세피아 700207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297번지 16/	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파출소 뒤 공터에	포항남부경찰서경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대구광역시남구청세무 포항시남구청세무, 건	
2009-141	경북27라4014 김인준	티코(TICO)오토 761104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번지 29/3 창포주공아파트 103동 1002호	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한마음회센터 앞 도로상에	포항시남구청경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세무	
2009-142	22조4529 양재우	스펙트라 820823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684번지 5호 8/2	포항시 북구 창포동 611-3 e편한마트 뒤편 도로상에	현대캐피탈(주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-212008카단1211 울산광역시 중구 청교행 울산광역시남구청지세 포항시남구청경교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지사징수 현대캐피탈(주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-21단지	
2009-144	경북29나7961 김영철	시에로 641029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57번지 1호 5/6	포항시 북구 죽도2동 미래주차장 뒷편 골목	포항남부경찰서경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세무 포항시청환위	
2009-145	강원80구3190 반상남	포터장축 631120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117-18	포항시 북구 죽도2동 능현죽도동지점 근처 골목상에	인제경찰서교행 인제군정환보, 경도, 세무 포항북부경찰서경교 포항시북구청경교 현대캐피탈(주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4단지	
2009-155	경북80다9534 임미경	포터장축슈퍼캡 690807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44번지 80호 13/5	포항시 남구 상도동 18-141 선안경로당 옆 도로상에	김숙임 경복 포항시 남구 상도동 609-152004 카단5594 포항남부경찰서경교 포항시남구청사회, 주민, 세무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징수, 환위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남부지사	

2009-159	부산4리1472 박영준	에스페로 1.5MT 620503-*****	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08번지주 근아파트205동617호	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-8 동해지구종합폐 차장내에	부산광역시상구정세무, 교통 부산광역시북구 청교행, 세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교동 김해시 청교행 광주광역시동구청교동 현대캐피탈(주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4단지
2009-160	경북27리2133 권병규	프린스2.000HCMT 620623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473 번지3호 한라파크맨션 201동305호	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-8 동해지구종합폐 차장내에	포항시청교행, 환위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 지사장수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 구청세무
2009-161	인천30도1964 이중남	그랜저2.4 590225-*****	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97번지4 호2층	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-8 동해지구종합폐 차장내에	인천광역시남구정세무, 교통, 환위 인천연수경 찰서교통 인천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 시청교행 인천광역시연수구청지교 현대자동차 (주) 서울특별시 중로구 계동 140-2단지
2009-162	경북29마19746 김남규	아벨라 670616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 613 번지 10/4 두호주공3차아파트 414 동 306호	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-8 동해지구종합폐 차장내에	남원시청교통 포항시북구청건교, 세무 포항북 부경찰서건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근로 복지공단포항지사남부 포항시청환위
2009-163	경북70가3361 김연득	그레이스 370915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 리 236번지 1호 (84-4353)	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-8 동해지구종합폐 차장내에	포항시남구청환위, 사회, 세무, 건교, 주민, 대전 광역시중구청교통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남부경찰서건교 포항시청환위
2009-171	경북35가1060 권홍규	머큐리세이블 710429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3 번지 11호 15/4	포항시 남구 상도동 611-7 조방돼지국방 은편 골목상에	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남구청세무, 건교 포항북부경찰서건교 포항시청교행, 환위 포항시북구청건교, 세무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 북부지사장수 포항남부경찰서건교 삼성캐피탈 (주)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단지

포항시의회공고 제 6 호

第157回 浦項市議會(臨時會) 集會公告

地方自治法 第45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第157回 浦項市議會(臨時會)를 다음과 같이 集會함을 公告합니다.

日時 : 2009年 8月 21日(金曜日) 午前 11時 30分

場所 : 浦項市議會 本會議場

2009년 8월 10 일

浦項市議會議長 崔 榮 萬